11.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- O 발의일자 : 2020년 10월 26일
- O 발 의 자 : 김재우 의원, 배지숙 의원, 이시복 의원, 이영애 의원, 김지만 의원, 윤기배 의원, 이만규 의원, 전경원 의원
- O 회부일자 : 2020년 10월 28일
- O 상정일자: 제279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
 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(2020년 11월 24일) 원안 가결

### 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김재우 의원)

#### □ 제안이유

O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양성평등 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, 업무 추진의 관련 근거와 내용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규정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 하려는 것임.

#### □ 주요내용

- O 양성평등 정책을 심의하는 여성행복위원회의 설치 근거법령을 명시(안 제7조제1항)
- O 여성행복위원회의 기능에 구·군 소관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비율 미달성 여부 제외사유에 대한 심의 기능을 신설 (안 제7조제2항)

O 양성평등주간이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(안 제24조제1항)

### 3. 검토보고 요지(보고자: 전문위원 김창업)

#### □ 주요 검토사항

- 안 제7조제1항 및 안 제7조제2항은 여성행복위원회의 심의·자문 근거와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위해, "양성평등정책"을 "법 제11조 의2에 따라 양성평등정책"으로 개정하고, "자문에 응한다"를 "심의·자문한다"로 개정하였음.
- 안 제7조제2항제6호는「양성평등기본법」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·자문 대상에 "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·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"을 추가하고, 기존의 제6호를 제7호로 개정하였음.
- O 안 제24조제1항은「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」개정에 따라 양성 평등주간을 "7월 1일부터 7월 7일"에서 "9월 1일부터 9월 7일"로 개정하였음.

#### □ 검토결과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「양성평등기본법」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관련 업무의 근거와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.

- 특히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21조제2항<sup>25)</sup>이 개정됨에 따라 구·군의 각종 위원회 위촉직 구성 시 특정 성별비율 미달성 여부에 대한 제외 사유와 관련하여 대구시 여성행복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심의기능을 추가하였고.
- O 올해부터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여권통문의 날(9.1.)<sup>26)</sup>을 기념하기 위하여「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」에서 여성주간이 9월 1일부터 9월 7일로 개정된 부분을 반영하였음.
- O 이번 조례개정으로 대구시 양성평등 정책을 심의·자문하는 여성 행복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양성평등 정책 수립을 위하여 내실 있는 심의·자문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으며.
- 양성평등 주간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이 발표된 여권 통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변경되는 만큼,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양성평등 주간의 본래 취지에 맞게 다양하고 의미있는 행사로 구성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음.

<sup>25)</sup> 제21조(정책결정의 참여)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〈개정 2020.5.19.〉

<sup>2.</sup> 시·군·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: 시·도위원회

<sup>26) 1898</sup>년 9월 1일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인 여권통문이 발표된 날로, 여권통문에는 여성의 교육권, 직업권, 참정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.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	답 변
질의없음.	

### 5. 토론요지

○ 없음.

# 6. 수정안 요지

○ 없음.

# 7. 심사결과

○ 원안 가결(재석의원 전원찬성)

# 8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음.

### 9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.